

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청소년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청소년기본법」 위임사항 조례 입법개정(안 제1조)
- 나.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(안 제2조)
- 다.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일부개정(안 제2조)
- 라. 읍·면·동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(안 제10조~제12조)
- 마.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삭제
- 바.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기능 강화

3. 참고사항

「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」

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”를 “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청소년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청소년위원회 구성)”을 “(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구미시청소년위원회”를 “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, “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”을 “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연직 위원”과 “위촉 위원”을 각각 “당연직위원”과 “위촉위원”으로, “경찰서장,”를 “구미경찰서장, 구미교육지원청”으로, “관계기관 공무원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및”을 “관련기관 공무원, 청소년분야 전문가,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대표 등”으로, “풍부한 자”를 “풍부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관계기관간”을 “관계기관 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당연직 위원”을 “당연직위원”으로, “위촉 위원”을 “ 위촉

위원”으로, “하되”를 “하되 한 차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회의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고가 있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”으로, “지명하는”을 “미리 지명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”를 “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전문가,”를 “전문가”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”를 “제8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27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청소년지도자, 청소년육성등”을 “청소년지도 및 청소년육성 등”으로, “있는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, “자 중에서 관할지역”을 “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”으로, “경찰관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9인이내로 하되 관내 읍·면·동의 자연환경·인구·학교위치·기타”를 “9명 이내로 하되, 해당 읍·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위치, 기타”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극빈청소년”을 “불우청소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알게

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하며”를 “하되 한 차례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제공·표창등”을 “제공·표창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청소년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)”을 “(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·면·동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지도위원”을 “지도위원”으로, “당해 읍·면·동의 지도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는”을 “해당 읍·면·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지도위원협의회는 읍·면·동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,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이 10명 이상인 읍·면·동은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.

제16조제5항 중 “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경비등”을 “지도위원협의회 경비 등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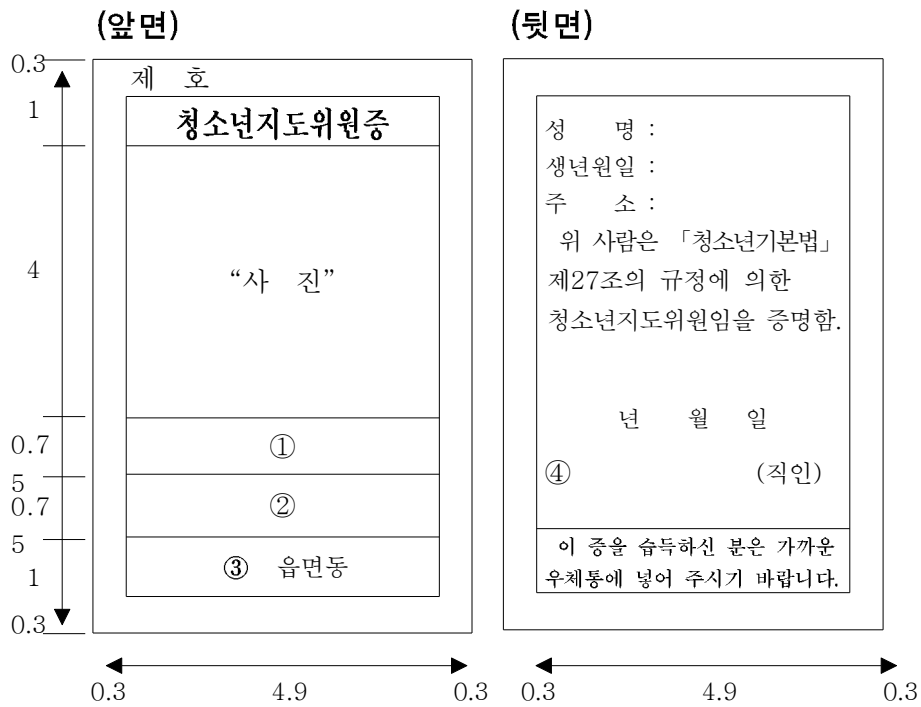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.

[별표]

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(제13조관련)



1. 지질은 인쇄용지 120g/m²하고 색상은 연두색으로 한다.
2. 사진규격(3cm×4cm, 탈모·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3. 용지규격 (가로×세로 = 5.5cm×8.1cm)
4. ①란에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
②란에 성명
③란에 소속기관명
④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
5. 신분증은 투명 P.V.C로 포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	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구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청소년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청소년위원회 구성) ①구미시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) ①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----- -----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----- 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, 교육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-----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-----당연직 위원은 구미경찰서장, 구미교육지원청 ----- 관련기관 공무원, 청소년분야 전문가,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대표 등 -----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(생략)

2.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

3. ~ 5. (생략)

6.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

풍부한 사람 -----
-----.

제3조(기능) -----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관계기관 간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에 -----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-----
당연직위원-----
----- 위촉위원-----
----- 하되 한 차례 -----
----- 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) ①-----
----- 회의를 총괄한다.

②-----
----- 부득이한 사유로

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
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
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
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
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출석 발언) 위원장은 위원
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
공무원, 청소년관계 전문가, 또
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
회에 출석·발언하게 할 수 있
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
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
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
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
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
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
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
다.

제10조(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)
①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
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

직무를 수행할 수 없-----
----- 미리 지명한 -----
-----.

제7조(간사) ①-----

-----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
로 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출석 발언) -----

----- 전문가 --

--.

제9조(수당 등) -----
----- 제8조에 따라 출석한
사람-----

----. -----

-----.

제10조(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)
①-----
- 법 제27조에 따라 -----

의하여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
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
을 둔다.

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,
청소년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
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주민
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
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
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
복지단체의 장, 학교장, 읍·면
·동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
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③지도위원수는 읍·면·동별
로 9인이내로 하되 관내 읍·면
·동의 자연환경·인구·학교
위치·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
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①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는
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

2. 한정치산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
사실이 있는 자

②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자에

-----.

②----- 청소년지도 및 청
소년육성 등-----
----- 있는 사람 -----

----- 사람 중에서
관할 지역 -----

----- 경찰서장-----

-.

③-----
- 9명 이내로 하되, 해당 읍·
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
위치, 기타 -----
-----.

<삭 제>

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·지원

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,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)

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5조(경비등 지원) 시장은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·여비·교육기회 제공·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청소년지도위원회 및 협

제12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-----
----- 각 호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불우청소년 -----

②-----
--- 알게 된 -----

-.

제13조(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)

①-----
하되 한 차례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경비등 지원) -----

----- 제공·표창
등 -----.

제16조(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 운

의회 운영)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·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·면·동의 지도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는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(이하 “지도위원협의회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읍·면·동 지도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며,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계공무원을 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,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지도위원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·면·동에 1명, 또는 1개 읍·면·동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.

⑤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영) ①지도위원-----

--- 해당 읍·면·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④ 지도위원협의회는 읍·면·동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,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이 10명 이상인 읍·면·동은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.

⑤지도위원협의회 경비 등 --

-----.